「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 민간위탁 동의안」

제 안 설 명

□ 의안번호 제1177호 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신규 민간위탁동의안에 대하여 제안설명 드리겠습니다.

□ 본 동의안은

- 「서울특별시 장기요양요원 처우 개선 및 지위 향상에 관한 조례」 제9조(장기요양요원지원센터의 설치 및 운영) 및 제11조(운영의 위탁)에 따라 「서울시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」를 전문성 있는 단체에 위탁·운영하려는 것으로서.
- 해당 센터는 2013년 설치 당시 돌봄종사자 지원시설의 필요성에도 불구하고 설치 근거가 없어, 은평구청을 지정하여 지방보조금사업으로 운영하고 2019. 12. 31.자로 만료 예정입니다.
- 이에 서울시가 어르신돌봄종사자종합지원센터를 민간위탁 운영함 으로써 돌봄종사자의 처우개선과 요양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고자 하오니, 원안대로 의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

이상	제안	설명을	마치겠습니	다
- 1 - 3				_